

## 중앙행정심판위원회

### 재 결

사 건 2021-5653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
청 구 인 정역록  
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용주1길 9, 502호(부곡동, 경원아트빌)  
(송달장소: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서해로987번길 7, 2동 221호)  
피 청 구 인 경기도남부경찰청장  
심 판 청 구 일 2021. 4. 22.

### 주 문

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.

### 청 구 취 지

피청구인이 2021. 4. 14. 청구인에게 한 2021. 5. 9.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.

### 이 유

#### 1. 사건개요

청구인이 2021. 3. 26. 혈중알코올농도 0.157%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피청구인이 2021. 4. 14. 음주운전을 이유로 청

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(이하 '이 사건 처분'이라 한다)하였다.

## 2. 관계법령

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

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, 별표 28 중 2.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

## 3. 인정사실

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
가.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계량계측기 도소매업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1996. 12. 10.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.

나. 청구인은 2021. 3. 26. 19:30경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역골동로 5-23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이륜자동차를 충격하여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,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20:16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.157%로 측정되었다.

## 4. 이 사건 처분의 위법·부당 여부

### 가. 관계법령의 내용

「도로교통법」 제93조제1항제1호,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.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, 시·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(혈중알코올농도 0.08% 이상)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

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.

나. 판단

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,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므로,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 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·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.

5. 결 론

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.

2021. 6. 8.

중앙행정심판위원회

